
Policy and Law Report _Vol.137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05.23.~ 2022.05.29) -

May 30,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적극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산업의 성장과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성공적인 미래차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자동차 부품기업을 가장 먼저 방문하고, 정책 방향을 통해 부품기업의 사업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힘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연구개발, 인력양성, 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부품기업별로 맞춤형 종합 패키지로 지원 –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테크노파크, 코트라, 신보·기보, 자동차연구원 등 범정부 지원기관과 함께 거버넌스 구성 추진 ② 부품기업이 미래차로 전환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 등 전환 장벽 해소 ③ 현재 4개 권역*에 운영중인 미래차 전환 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산 * 동남권(경남), 전라권(광주), 대경권(대구), 충청권(충남)	2022-05-24
	• 한국 주도 '국제 수소협회 연합체' 출범으로 글로벌 민간 수소협력 박차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GHIAA*) 포럼"에 참가하여 한국의 수소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글로벌 민간 수소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GHIAA는 창립총회를 통해 초대 의장국으로 한국을 추대하였으며, H2KOREA에 사무국을 설치기로 함 * GHIAA : Global Hydrogen Industrial Association Alliance 한국 수소경제 정책 방향은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경제성과 기술성숙도를 고려하여 수소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나갈 계획으로, ① (생산) 청정수소의 에너지원을 태양광, 풍력, 원전, 천연가스 등으로 다양화해 나가며 국내 외에 대규모 수소 생산기지 구축 ② (유통) 전세계적인 수소 공급 촉진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운송선박 및 인수·저장 시설을 완비하고 글로벌 청정수소 인증기준 정립 ③ (활용)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과 융복합 수소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고, 수소·암모니아 발전 기술개발·실증 및 수소발전 시장 개설 추진 주요국의 수소협회들은 자국의 수소정책·산업현황을 발표한 바,	2022-05-25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미국) Hydrogen Shots 목표를 소개*하고 초당적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한 수소분야 약 95억 달러(약 11.8조원) 투자 계획 * 한(1) 세기 이내 수소 1kg 당 1\$ 달성(1-1-1) (영국) 저탄소 수소 생산 계획을 2배로 늘리고(5GW→10GW) 2.4억 파운드(약 3,800억원) 규모의 수소펀드 신설 (독일) 9억 유로(약 1.2조원) 규모의 "H2 Global" 펀드를 설립하고, 정부보조금을 통해 국제 수소거래시장 메커니즘을 구축할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산업포럼』 정례화하여 한미 정상회담 및 IPEF 출범이후 민관 협력방안 모색 산업계와 통상 현안과 기업 애로를 논의하기 위해 '13년 구성된 통상 분야의 대표 민관협업 채널인 『통상산업포럼』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를 업계에 공유하고,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따른 민관 공동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최근의 글로벌 통상 변화에 부합하는 정부의 실용형 新통상 정책 방향 논의하였음 * 5.23일 13개국 정상회의를 통해 출범, 4대 필러(▷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에 대한 규범 및 협력의 틀 마련 예정 동 회의의 주요 내용으로 ① 한미 정상회담 경제분야 주요 성과 - 정부는 금번 정상회담 계기 설치된 장관급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韓 산업부장관-美 상무장관, 연1회 개최)를 공급망 위기대응, 첨단기술 협력 등을 위한 실질적 협력채널로써 활용할 계획이라고 업계에 설명함 - 또한, 금번 국내 투자유치 주요 성과*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향후에도 외국인 투자가 공급망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언급함 * 넷플릭스(자회사) 투자신고(6년간 1억불),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MOU 체결 ②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추진 동향 및 향후 계획 - 5.23일 출범한 IPEF의 경우, 세부 논의를 통해 공급망·디지털·탈탄소 등 관련 글로벌 통상규범 정립 및 역내 협력사업 발굴이 본격화될 예정임을 설명 -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시작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논의에 참여하여 우리 기업의 역내 진출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당부 ③ 실용형 新통상 정책 추진 방향 - 정부는 1)기업의 통상 이슈를 적시에 해결하고, 2)공급망·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며, 3)인태 지역 內 신통상 질서 형성에 기여하고, 4)그린/디지털 통상을 추진해 나갈 것을 골자로 하는 '실용형 新통상 정책'을 수립할 계획임을 밝힘	2022-05-26

부처	내용	일시
중소벤처 기업부	•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및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3개 사업*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함 *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개발, 중소기업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중소기업 탄소다배출 업종별 저탄소 신기술 모범사례를 개발·확산하고 유망 중소·벤처기업과 연구기관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 ② 저탄소 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황진단 → 탄소중립 전략수립 → 설비도입'을 패키지로 지원 * 참여희망 중소기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신청	2022-05-24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5.23. 시행)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민원 처리 완료 시점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법상 신고를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 일정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로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022-05-23
국토 교통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5.25. 시행, 일부 조항은 2022.11.26. 시행 예정)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시 와이어로프가 검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재검사 대상으로 하고,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의 시설보유기준에 초음파두께측정기 등을 추가하는 등 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설기계소유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건설기계를 등록하고 등록번호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록관청의 표시를 삭제한 등록번호표를 도입하는 한편,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성검사 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2-05-25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5.27. 시행)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기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여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 요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에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주택에 보다 많은 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도록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을 일부 완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 복지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고령자복지주택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택 공급 호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2-05-27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원자력 안전 위원회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22.6.9. 시행 예정)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국가안전보장 등과 관련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와 원자력안전정보에 관한 지역 주민과의 소통 기능을 수행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39호, 2021. 6. 8. 공포, 2022. 6. 9. 시행)됨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절차,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원자력안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3조 및 별표 1)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와 소통에 필요한 조직·인력·시설을 갖춘 공공기관이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 실적과 해당 연도의 계획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②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제4조) - 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범위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때에는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 등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정보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분류가능한 최소 정보 단위로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는 등 비공개 정보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때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정함 ③ 원자력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 및 제10조) -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당연직위원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소속되어 원자력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 등으로 정함 -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위촉위원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해당 시·군·구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정함 - 원자력안전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 분기 1회, 임시회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등에 개최하도록 함	2022-05-24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환경부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분담금의 추가 징수가 필요하며, 추가분담금 부과 시점을 고려하여 분담금 산정에 필요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수의 적용 기간 현행화 필요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분담금 산정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수 적용 대상 기간을 2014년 4월 1일부터 분담금을 산정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대상 기간에 맞추어 인용 조문을 현행화함 (안 제34조) ※ 의견 제시기간 : 5/27(금)~6/20(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가습기 살균제피해구제긴급대응반)로 제출	2022-05-27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조기 폐차 지원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고자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기폐차 권고 대상 경유차를 확대 (안 제79조 제1항제1호) - 조기폐차 권고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중 경유자동차의 범위를 현행 별표17 제2호 "마~아목"(2006년 1월 1일 이후 기준이 적용된 경유자동차)으로 규정하던 것을 "바~아목"(2009년 9월 1일 이후 기준이 적용된 경유자동차)으로 변경 ※ 의견 제시기간 : 5/27(금)~7/7(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교통환경과)로 제출	2022-05-27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국토 교통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현재 물류단지 안에 있는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시행자가 공공시설의 설치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납부하게 하는 시설부담금의 면제대상 중 공동주택과 종교 관련 시설의 경우 공공시설 설치로 인해 금전적, 비금전적 혜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시설부담금이 전액 면제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감면대상은 공공성이 부족하고 감면비율 산정근거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일부 감면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부담금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① 공동주택과 종교집회장, 종교시설을 시설부담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설부담금의 일부 감면제도를 폐지함 (안 제21조) ※ 의견 제시기간 : 5/27(금)~7/7(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첨단물류과)로 제출	2022-05-27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현행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채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주인수권증권을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한편, 전환사채의 경우 발행방식의 제한이 없는데, 이를 악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그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매입함으로써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소유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 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그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매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편법적으로 신주인수권을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안 제165조의10제3항 신설 등)	2022-05-25
기획재정 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1인)」 현행법에서는 민간의 해외자원 확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특례, 해외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 또는 출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특례가 도입되어 있으나 대부분 일몰기한이 도과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내국인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으로 인한 상하이 봉쇄 등으로 인하여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그에 따른 자원 가격의 변동성이 심화되는 등 국가적으로 안정적인 산업 원재료 수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외국법인으로서 내국인이 100% 출자한 법인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국가경쟁력 제고 및 산업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지원과 관련된 조세특례를 재도입하고, 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자회사의 경우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2022-05-25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①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도입함 (안 제22조) ②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대상으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자회사를 포함하고자 함 (안 제24조제1항) ③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도입함 (안 제104조의15)	
기획재정 위원회	• 「<u>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20인)</u>」 최근 공공영역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 민간인이 경영하게 하는 공기업 민영화 관련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그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민간인의 수익중시 경영으로 인해 당장 국민부담의 증가가 우려됨 이에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영화의 추진대상에서 가스공사, 공항공사를 제외하여 국가 기간산업 내에서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해당 공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를 삭제함 (안 제2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 삭제)	2022-05-26
문화체육 관광 위원회	• 「<u>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0인)</u>」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정을 받은 게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이 구글·애플 등 앱마켓사업자가 실시하는 자체적인 등급분류 절차를 거쳐 공급되고 있음 그러나 올해 초 '15세 이용가'로 국내에 출시된 한 외산 게임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적절한 제재없이 유통이 되는 등 자체등급분류에 수반되어야 할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간소화된 등급분류 절차를 거쳐 유통된 게임의 등급분류가 부적정한 것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경우 게임사업자는 해당 게임물의 유통·이용에의 제공을 중지하도록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검토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의11제3호 신설 및 제24조의3, 제48조제2의8호 신설)	2022-05-24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국토교통 위원회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0인)」 드론산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산업육성을 위하여 2019년 4월 현행법이 제정되었고, '16년 704억원 규모였던 국내 드론시장은 '24년 8천억원 규모까지 성 장이 예상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 그런데 배송·인프라 점검 등 다방면에 드론을 활용 중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우리나라 는 촬영·농업 등 단순기술이 적용되는 특정 분야에 드론 활용이 집중되어 있는 등 한계가 존 재하는 상황에서 드론산업을 한단계 더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 원 전담기구의 설립을 통해 드론 활용분야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드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산업진흥원을 설립" 하도록 하여 드론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흥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9조의2 신설)	2022- 05-24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5/31(화)	『월간 국회도서관』 6월호 발간 - 국회의원의 서재: 최형두 국회의원 - 특집: 고전 읽기의 가치와 활용	
예산정책처	주중	「2022 경제전망」 발간	
	주중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제19호 발간	
	주중	「NABO 경제동향」 5월호 발간 - 소비, 투자, 대외거래, 물가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 동향, 생산·고용·인구, 금융·에너지 및 원자재·부동산 동향 분석	
입법조사처	5/31(화) 14:00	전문가 간담회 - 정의로운 전환의 산업별 고용 및 노동쟁점 - 류승민 연구위원 (민주노동연구원)	
	5/31(화) 15:00	전문가 간담회 - 지방의회 교육훈련의 실태와 개선과제 - 최민수 교수(제윤의정 지방의회연구소)	
	6/2(목) 10:00	전문가 간담회 - 메타버스 가상경제 - 최형욱 대표 (퓨처디자이너스)	
	6/2(목) 14:00	전문가 간담회 - 민속주, 지역특산물산업계 현안과 상생협력을 중심으로 - 이대형 박사 등 (경기도농업기술원)	
	6/3(금) 16:00	전문가 간담회 - 메타버스 관련 지식재산 이슈와 과제 - 손수정 선임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6/3(금) 10:00	전문가 간담회 - 과학기술원 기술지주회사의 기술이전·사업화 체계와 제언 - 김판건 대표이사 (미래과학기술지주)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5/30(월) 14:00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	윤창현 의원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1] 지난 주 뉴스레터(제136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5/27(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89호 발간	
국회도서관	5/24(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94호 발간 - 독일의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입법례	
	5/25(수)	「최신정책정보: 국내」 제97호 발간 - 교육의 디지털전환, 아직도 선택의 문제인가?	
	5/26(목)	「현안, 외국에선?」 제36호 발간 - 글로벌 공급망 위기관련 미국과 호주의 최근 동향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5/25(수) 13:30	여수·광양항 해운물류 미래 비전 국회토론회	주철현 의원실, 해양수산부 외	의원회관 1세미나실
5/25(수) 14:00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 신사업 활로는?	윤창현 의원실, 생명보험협회 외	의원회관 2세미나실
5/26(목) 14:00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블록체인 신사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윤창현 의원실, 한국경제TV	의원회관 1세미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백대용 변호사 |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변호사 |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변호사 |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변호사 |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 • 서예지 변호사 | T. 02-316-1787 E. yjiseo@shinkim.com |
| • 나인선 변호사 |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 • 문응필 변호사 |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
| • 최유리 변호사 |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변호사 |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변호사 |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 • 김은혜 변호사 |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